

의안번호	2208764
의 퇴 인	서명옥의원
회 답 일	2025.05.12.
추계번호	25C14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의 지원)	○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하여야 함</u> (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6조의2 (실태조사)	○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8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음 *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2 (실태조사)	○ 기시행으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재 수행 중인(2024.11.19.~2025.6.17.)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¹⁾ 에서 이미 시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20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로, 직종별 양성 현황, 면허 및 자격 보유 현황, 활동 현황, 제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전공의 수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동 실태조사는 3년마다 수행되고 있으며, 2차 실태조사를 위해 2억 2,300만원이 배정됨

2. 상세 사유

□ 국가의 지원(안 제3조)

- 개정안은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전공의 지원 사업 범위와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현행 사업의 확대 여부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예시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을 통해 8개 전문과목* 및 인턴을 수련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련 지원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2025년 기준 2,332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에 9억 4,300만 원을 배정하여 전산 시스템 구축,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교육전담 및 책임 지도전문의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을 밝힘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